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0.05.12

3. 주요 정정사항 : 자투자신탁 추가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자투자신탁 추가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<생 략> 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생 략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④ <생 략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현행과 같음> 2. 유리코리아성장&배당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3.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4.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④ <현행과 같음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생 략> <신 설>	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현행과 같음>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<신 설>	부 칙 이 신탁계약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